17世紀 前半 回答兼刷還使의 派遣과 經濟的 意味

양 흥 숙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차 례

- Ⅰ 머리말
- Ⅱ. 회답겸쇄환사의 파견과정과 목적
 - 1 제1차 회답겸쇄화사
 - 2. 제2차 회답겸쇄화사
 - 3. 제3차 회답겸쇄화사
- Ⅲ. 사절의 구성과 파견준비
 - 1. 삼사 체제의 정착
 - 2. 사절의 구성
 - 3. 사절의 물품준비
- Ⅳ. 무역활동과 의미
 - 1. 무역에 대한 규칙
 - 2. 무역물품
 - 3. 무역상인
- V. 맺음말

Ⅰ.머리말

지금까지 回答兼刷還使는 대체로 17세기 초 일본에 파견된 통신사로 인식되었다. 그러므로 회답겸쇄환사의 3차례에 걸친 파견을 포함하여 조선후기 통신사 파견을 12차례로 보고 있다. 12차례 중 17세기 초 3차례 파견된 사절에 대해 회답겸쇄환사라고 구분하여 명명하더라도 통신사와의 차별성이나 유사성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다.

회답겸쇄환사든, 통신사든 조선국왕이 파견한 국왕사임에는 틀림 없지만 대의명분이 최우선되는 외교사절의 경우 이름을 어떻게 명명 할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였다. 사절의 명칭은 해당 사절의 파견 목적 및 역할과도 관련이 깊다. 임진왜란 이후의 조일관계를 어떻게 재개 할까의 문제이기도 하였다.

회답겸쇄환사는 그 이름에서 임진왜란의 혼란상을 극복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을 알 수 있다. 곧 전쟁을 일으킨 국가의 원수가 조선국 왕에서 사과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에 대한 회답이며, 무고하게 끌려 간 조선인들을 귀환시키는 것이다. 이 목적이 이루어진 후에 양국의 국교를 재개한다는 조선측의 의지였다. 양국의 信義를 바탕으로 한 평화교류의 상징인 통신사가 이후 파견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 야 하는 절차였다.1)

^{1) 「}通航一覽」등 일본측 사료에는 회답겸쇄환사를 모두 通信使 信使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에도 일본 사절이 요청한 사절이 통신사라고 기록하고 있다.

4 / 港都釜山 第21號

1607년, 1617년, 1624년에 파견된 회답겸쇄환사는²⁾ 각기 다른 목적을 띠고 파견되었다. 1624년 세 번째 회답겸쇄환사의 경우는 德川家 光의 막부장군직 계승을 축하하기 위해 파견되어 그 파견목적이 이후 통신사와 동일하다.

임진왜란의 혼란상을 극복하기 위해 파견된 회답겸쇄환사는 외형 적인 면이나 내용면에서 점차 통신사와 동질적인 모습을 보였다. 통 신사는 국가간의 신의와 선린외교를 표방하는 사절이다.

회답겸쇄환사에 대해서는 『朝鮮王朝實錄』, 『備邊司謄錄』 등의 연대기 자료와 몇가지 기행문 등이 참고된다. 1607년 기행문인 慶暹의 『海槎錄』, 1617년 기행문인 吳允謙의 『東槎上日錄』, 朴梓의 『東槎日記』, 李景稷의 『扶桑錄』, 1624년 기행문인 姜弘重의 『東槎錄』이었다. 또한 예조에서 1607년 파견과 관련하여 준비사항을 기록한 『海行錄』이 있다. 일본측 사료는 『朝鮮通交大紀』를 주로 참고하였다.

이글에서는 위 자료들을 참고하면서 회답겸쇄환사의 수행원 구성, 盤纏, 禮物 마련 등에서 이후 통신사와의 다른 모습들을 살필 것이 다. 점차 이후에 파견되는 사절의 前例가 되면서 통신사의 원형이 되

²⁾ 손송철 교수는 1624년에 파견된 사절은 회답겸쇄환사가 아니라 회답사라고 하였다(조선통신사문화사업추진위원회·경성대학교한국학연구소, 『통신사, 한・일교류의 길을 가다』, 2003, 71쪽). 이 당시에도 조선인의 쇄환은 이루어졌다. 또한 1617년의 경우에도 회답겸쇄환사를 줄여 그냥 회답사라고 지칭하는 사례가 많이보인다. 회답겸쇄환사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內藤雋輔, 『文祿・慶長役における被擄人の研究』, 東京大學出版會, 1976, 三宅英利, 손송철 역, 『근세 한일관계사 연구』, 이론과실천, 1991, 金靜日, 「朝鮮後期 對日交隣政策 研究-1636年「通信使」와 朝鮮의 對馬島認識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李敏昊, 「壬辰倭亂後 첫번째 回答겸 刷還使의 派遣」 『동서사학』창간호, 1995;「光海君朝의 對日關係考察」 『동서사학』 4, 1998, 洪性德, 『十七世紀 朝・日 外交使行 研究』,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등이 있다.

어가는 모습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회답겸쇄환사의 무역활동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Ⅱ. 回答棄刷環使의 派遣渦程과 目的

1) 제1차 회답겸쇄환사

임진왜란 직후 德川家康은 豊臣秀吉과의 차별성을 표하고 조선에 양국의 국교 재개를 지속적으로 청하였다. 국교 재개에 앞서 조선측은 1604년 사명대사와 孫文彧을 探賊使로 일본에 파견하였다. 일본의 정세를 파악함은 물론 국교 재개에 대한 막부의 진심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탐적사가 돌아온 후에도 조선 조정은 여전히 국교 재개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다. 국교 재개와 같은 중요 사안에 대해 일본 중앙의 관리를 파견하지 않고 대마도의 관리를 사절로 보낸 것 등으로일본측의 진위를 파악하고자, 의견이 분분하였다. 국교 재개의 일로대마도에서 파견된 橋智正의 말이 일본 막부의 의지인지, 대마도의의지인지가 불분명하고, 이 일을 담당하기위해 부산에 파견된 역관차大根의 보고에 대해서도 쉽게 납득해서 가볍게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논이었다. 3 그런데 6년동안 국교 재개 요청이계속되고 1606년 5월까지 일본에서 5,720여명의 被擴入이 쇄환되었다. 4 일본측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해주지 못하는 외교적 부담감도 여러 차례 논의되었다.

^{3) 『}선조실록』 선조 39년(1606) 4월 계묘(5).

⁴⁾ 內藤雋輔, 앞의 책, 59쪽.

| 파견시기 | 정 사 | 부 사 | 종사관 | 파견목적 | 쇄환 조선인수 | 비고 |
|-----------------------|-----|-----|-----|-------------------|------------------|------------|
| 1607. 1. 29~7. 3(5개월) | 呂祐吉 | 慶 暹 | 丁好寬 | 修好, 회답겸쇄환 | 1240여명 | |
| 1617. 7. 7~10.18(4 개월 | 吳允謙 | 朴梓 | 李景稷 | 大坂 平定 축하 회답겸쇄환 | 321명 | 京都 까지 감 |
| 1624. 10. 2~3. 5(5개월) | 鄭 岦 | 姜弘重 | 辛啓榮 | 家光 襲職축하 회담겸쇄환 | 141명 (朝鮮通交大紀) | |

회답겸쇄환사의 파견과 쇄환인

결국, 1606년(선조 39) 5월에 양국 국교 재개의 일이 아닌 일본국 정탐을 위한 書契를 작성하고, 일본 막부에 전달하도록 결정하였다.5) 무관인 全繼信과 趙暄을 대마도에 파견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물자 준비도 서둘렀다.6)

그런데 7월 德川家康의 國書 및 犯陵賊 송환에 관한 일을 알리는 일본측의 서계가 왔다는 보고가 경상감사로부터 있었다. 이는 조선 측의 국교 재개에 대한 선행조건이었다. 그리고 8월 23일에는 德川家康의 국서가 이미 대마도에 도착하였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이 국서가 거짓이 아니라면 희답 국서를 가져갈 사절을 파견해야 하고, 통신사가 아닌 通識使를 보내어야만 한다는 것이 조선의 입장이었다. 기이에 앞서 대마도에 간 전계신은 일본 국서의 송부 및 범릉적송환에 대한 일본측 정세를 파악하는데 주력하였다. 또한 일본 국서에 대한 사전 점검도 행하였다. 8)

조선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을 확인하고, 조선에서는 곧 일 본에 보낼, 사절이 가져갈 물건, 노자 준비에 들어갔다.⁹⁾

^{5)『}선조실록』 선조 39년 5월 乙酉(18).

^{6) 『}선조실록』 선조 39년 5월 戊子(21), 癸巳(26).

^{7) 『}신조실록』 선조 39년 7월 辛未(4), 8월 己未(23).

^{8) 『}선조실록』 선조 39년 9월 己卯(13).

^{9)『}선조실록』 선조 39년 9월 庚辰(14).

다만 임진왜란 후 국교 재개를 상징하는 사절이었으므로 사절의 명칭을 어떻게 할까가 논의 대상이었다. 通諭使,回籲使,回答使,回 答刷還使,刷還使,回答兼刷還使라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출발하기 얼마 전 回答兼刷還使로 명명되어 사절에게 급히 통보되었을 정도로 사절 명칭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었다. 사료에는 줄여서 흔히 회답사 라고 기록하였다.10)

2) 제2차 회답겸쇄환사

제1차 회답겸쇄환사가 10년에 걸친 일본측의 요청 끝에 이루어졌는데 제2차 회답겸쇄환사도 쉽게 파견되지는 못하였다. 몇 차례에 걸친 요청 후에야 가능했다. 사절 파견이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일본에서 내세운 요청 이유도 변했다. 제2차 사절을 처음 요청하였을 때에는 일본 國婚에 대한 축하사절 파견이었다. 1613년 9월 特送船을 타고 왜관에 온 差倭는 關白 秀忠이 天皇家와 다음 봄에 婚姻한다고하고, 이를 축하하는 조선 사절(信使)을 청하였다.11) 이에 대해 조선 측은 1614년 4월 결혼은 서로 축하해야 하지만 예부터 이러한 예가 없다고 하고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거절하였다.12)

1614년(광해군 6)에 막부 장군의 명에 따라 對馬島主 宗義智가 通信使를 다시 청하였다.¹³⁾ 이보다 앞서 1609년부터 일본 사절의 중국 朝貢路 확보, 일본 사절의 한양 上京, 歲遣船 贈給, 圖書 문제 등이줄곧 서계에 제기되고 있었다. 또한 1614년 7월에는 東萊府使가 대마도주에게 보낸 서계에 鬱陵島와 礒竹島에 대한 일본측의 관심을 일

^{10) 『}선조실록』 선조 39년 9월 己巳(3), 9월 癸酉(7), 甲午(28), 癸未(17), 40년 1월 戊辰(4), 1월 己巳(5), 6월 辛亥(20).

^{11) 『}변례집요』 권18, 信使, 癸丑 9월, 『接待事目錄抄』癸丑 9월.

¹²⁾ 田中健夫・田代和生 校訂,『朝鮮通交大紀』 25, 萬松院公(宗義智), 194零.

^{13) 『}朝鮮通交大紀』 권5, 199쪽.

축하는 내용이 실려 있다. 조선 조정에서도 이에 대하여 경상감사와 부산에 있는 관리들이 일본에 서계를 보내 이 일을 일깨우도록 하였다.14)

1614년 통신사 파견 요청은 막부장군의 國婚이 명분이었다. 일본 조정이나 대마도의 實利를 꾀할 수 있는 위 현안이 실제의 목적일 가능성이 많다. 통신사 파견 요청에 대해 당시 예조참의 金髓가 보낸 답서에는 통신사 파견이 어렵다고 하였다. 조선측은 그간의 일은 이미 글을 통해 알려졌으니 별도의 통신사 파견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세견선 정액, 약조 체결 등은 모두 중국에 알리고 있고, 실오라기 같은 일도 조선이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선과 일본의 국교 재개 과정에서 조선은 중국의 존재를 줄곧 견지해왔다. 일본에 사절을 보내는 것은 결국 義에 어긋나고 근거가 없다고 하였다. 15) 두 번째 회답겸쇄환사 또한 일본측의 사절 요청에 대해 중국을 거론하면서 파견 불가의 입장을 나타냈다.

1615년 7월 대마도주는 다시 통신사 파견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예조참의 柳潤은 대마도주에게 보낸 답서에 일본에 慶弔事가 있을때 조선에서 사절을 보내는 일은 아직 없었다라고 하였다. 또한 중국을 무시하고 함부로 사절을 파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16)

1615년 11월 대마도주는 다시 통신사 파견을 요청하였다. 예조에 보낸 서계에

우리 전하는 금일에 이르러 지난 통신사들의 誇光을 잊지 못하 시고 전부터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그러나 지금 貴曹(조선 예조) 에서는 (통신사 파견을) 허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여기에 꾸짖

^{14) 『}朝鮮通交大紀』 권5, 196~199쪽, 『광해군일기』 광해군 6년 9월 辛亥(2).

^{15) 『}朝鮮通交大紀』 권5, 200쪽.

^{16) 『}朝鮮通交大紀』 刊6, 光雲院公(宗義成), 206~207쪽.

음을 나타내는 것을 더하니 이 일은 평상시의 例가 아니다.

라고 하였다. 이 서계로 인해 다음 해인 1616년에 通信使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한 예조의 답서에

작년 겨울 일찍이 貴島(대마도)가 사절을 요청하는 뜻을 鎭江의 遊擊府에 알렸다. (중략) 조정은 마땅히 전례에 따르고 사실에 의거하여 天朝(명)에 알려 요청할 것이니, 信使를 파견하고, 隣 好를 닦을 수 있다.

라고 하였다. 조선 조정에서는 누차에 걸쳐 대마도에서 사절을 요청해 왔으므로, 대마도가 성의를 다한 것으로 느끼고 중국에 알린 후드디어 사절 파견 요청을 수락하였다. 12월에 다시 대마도주에게 서계를 보내어 사절 파견을 확인시켰다.17)

1617년 제2차 회답겸쇄환사가 가져간 조선국왕의 국서에는 貴國平定大坂 統合日域이라는 파견 목적을 써 놓았다. 18) 1615년 5월 德川幕府가 豊臣秀吉의 아들인 豊臣秀賴의 근거지인 大坂을 평정함으로써 비로소 일본 영역을 한 통치권 아래에 놓인 것을 축하한다는 의미이다. 이상과 같이 제2차 회답겸쇄환사의 파견 목적은 여러 가지였다. 사절을 요청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모두 거론되었다.

조선측에서 제2차 회답겸쇄환사를 파견한 이유는 또 다른데서 찾을 수 있다. 당시 조선 주변의 국제정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1611년 八旗兵制를 확립한 후금세력은 명을 위협하고 있었다. 또한 조선과 일본과의 교류, 조약 체결 등으로 명의 의혹도 받고 있었다. 또한 왜관에서의 크고 작은 분쟁, 일본과 중국과의 통상 등이 보고되

^{17) 『}朝鮮通交大紀』 刊6, 209~211쪽.

^{18)『}朝鮮通交大紀』 권6, 212쪽.

었다.¹⁹⁾ 명, 후금, 일본과의 다각적 외교관계를 수립하려는 당시 조 정이 국제관계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 사절 파견 요청을 수락한 1616년(광해군 8) 8월에 실제로 광해군은 국제 정세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드러냈다.

歲遣船이 오랫동안 나오지 않고 家康의 生死 또한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 일본의 정세를 추측할 수 없다. 방비는 어지럽게 되어, 한가지 일도 믿을 수 없다. (중략) 지극히 서북과 같은 곳의 방비도 또한 형세가 없다. 잘못하여 풍전등화의 변고가 생기면 무슨 병력으로 막겠는가. 지극히 한심하다. 下三道의 都巡察使를 大禮 후 즉시 내려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이치를 헤아려방비하도록 하라.

라고 하였다.20)

해마다 대마도에서 건너오는 세견선은 바로 朝日 貿易船이므로 대마도의 경제와 직결되었다. 매년 무역선을 1척이라도 더 보내기 위해안간힘을 쓰는 것이 대마도였다. 또한 세견선에는 일본 외교사절이동승하여 오므로 일본의 정세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런데이러한 세견선이 대마도에서 나오지 않으니 조선측은 당연히 궁금하게 여겼다. 또한 후금이 날이 갈수록 강성해지는데, 북방의 경계는이를 능히 막을 수 있는 준비가 되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일본의 재침이 우려되었다. 남쪽의 변방이라도 굳건히 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수비를 강화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긴박한 국제정세속에서 일본의 상황을 탐지하는데 회답겸쇄환사 파견의 실제적인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다.

조선은 이러한 국제 정세 파악과 일본의 재침 등에 대한 정보 확

¹⁹⁾ 三宅英利, 앞의 책, 134쪽.

^{20) 『}광해군일기』 광해군 8년 8월 丁未(9).

보에 민감해져 있었다. 1617년 회답겸쇄환사의 파견 전에 일본에서 쇄환된 愼應昌의 상소에서도 알 수 있다. 신응창은 1597년 정유재란이 발발하였을 때 일본 日向으로 끌려간 진주 유생이었다. 신응창은일본의 통신사 요청의 실질적인 목적을 말하고, 신응창이 말한 德川家康의 用兵術은 바로 문서로 작성되어 각도의 兵·水使에게 내려졌다.²¹⁾ 이렇듯 일본에 대한 정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이미약속된 사절 파견을 계속 진행해 나갔다.

제2차 사절의 경우 파견 논의중에는 회답사라고 명명하다 1607년 의 예에 따라 사절의 이름을 회답겸쇄환사로 급히 고쳤다. 이미 부산으로 간 사절에게 급히 전해져 공식명칭을 회답겸쇄환사라 하였다.²²)

3) 제3차 회답겸쇄환사

제1차, 제2차 회답겸쇄환사는 몇 년 동안의 파견요청을 받고 어렵게 파견되었다. 이와 달리 일본의 사절 요청이 있고 1년이 조금 지나 1624년 제3차 사절이 파견되었다. 이 때에는 국내외 정세가 많이 변하고 있었다. 1623년 3월 인조반정이 일어나 조선은 새 군주가 통치하게 되었다. 또한 같은 해 7월 일본도 德川秀忠이 물러나고 새 장군德川家光이 그 직을 계승하였다. 8월 대마도주를 통해 告慶使를 보내어 조선에 알렸다. 두 나라 모두 경사가 겹쳐 이를 축하하는 사절이었다.

1624년 8월 예조참의 吳百齡이 일본 執政 本多正純에게 보낸 서계에

貴國(일본)은 새 국왕이 왕위를 계승하여 國運을 다시 한번 일으켰다. (중략) 새 국왕이 옛 약속을 어기지 않고, 살펴 이전의

^{21) 『}비변사등록』 광해군 9년 1월 9일.

^{22) 『}광해군일기』 광해군 9년 6월 己未(26).

通好를 계승하여 誠意를 정성스럽게 한 것이 예사롭게 나오니이를 우리 국왕께서 살피셨다. 그러므로 使者를 보내 예물을 받들고 축하를 보냈다

라고 하여²³) 회답겸쇄환사 파견을 확인하였다. 새 막부장군의 계승을 축하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평화관계를 지속하자는 의미이다. 새 막부장군의 즉위에 따른 사절 파견은 1624년 제3차 회답겸쇄환사부터 시작되어 이후 통신사까지 이어졌다.

德川幕府 제4대 장군 德川家綱(1651년), 제5대 장군 德川綱吉 (1680년), 제6대 장군 德川家宜(1709년), 제7대 장군 德川家繼(1713년), 제8대 막부장군 德川吉宗(1716년) 등 막부장군이 새롭게 즉위할 때마다 일본에서 고경사가 파견되었고,²⁴⁾ 이에 대해 조선에서는 통신사를 파견하는 전례가 생겼다.

일본 막부의 축하사절, 조선인 쇄환 외에 조선은 또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절을 파견하였다.

인조는 정사인 鄭岦에게

우리나라 사람은 이웃나라의 일을 능히 탐지하지 못한다. 그대들은 이번 행차에서 모름지기 일일이 캐내어 오라.

라고 하였다.²⁵⁾ 일본 정세 파악을 위한 목적이었다. 조선과 일본의 평화관계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일본에 대한 방위체제를 해제할 수 없었다. 방위체제를 유지하고, 군비를 확충하면서 민들의 생활은 어 려워졌다. 이에 전란 이후 복구사업은 느리게 진행되었다.²⁶⁾

²³⁾ 田中健夫 編,『善隣國寶記・新訂續善隣國寶記』, 集英社, 1995, 456~457쪽.

^{24) 『}朝鮮通交大紀』 권6, 215~216쪽.

^{25) 『}인조실록』 인조 2년 8월 壬寅(20).

이러한 일본 정세에 대한 탐지는 조선인 쇄환 외에 제1차, 제2차, 제3차 회답겸쇄환사의 공통된 목적이었다. 이후 통신사 파견에도 이러한 목적은 계속 된다.

Ⅲ. 使節의 構成과 派遣準備

1) 三使 체제의 정착

조선전기 일본에 파견되는 사절은 파견목적에 따라 通信使, 通信官, 回禮使, 回禮官, 報聘使, 客人護送官, 招撫官, 賜物管押使, 體察使, 敬差官, 致奠官, 致賻官, 垂問使, 宣慰使(官) 등으로 그 이름도 다양하였다.²⁷⁾ 이들 사절은 正使, 副使, 書狀官(從事官)이 함께 파견될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三使체제가 아닌 二使체제였다.²⁸⁾ 회답겸쇄환사에 앞서 1604년에 파견된 探賊使 역시 사명대사, 손문욱의 이사체제였다.

1607년 제1회 회답겸쇄환사는 正使(上使), 副使, 從事官으로 구성된 삼사체제였다. 이 사절은 庚寅年(1590) 사절의 예에 따라 상사, 부사, 종사관을 문관에서 뽑아 보내도록 하였다.²⁹⁾

1590년에 파견된 사절은 상사 黃允吉, 부사 金誠一, 서장관 許筬이 임 명되는 삼사체제였다. 허성은 종사관이 아닌 서장관으로 파견되었다.

정사를 최고책임자로 하여 부사, 종사관이 함께 파견되는 삼사체

²⁶⁾ 三宅英利, 앞의 책, 159쪽.

²⁷⁾ 조선전기 일본에 파견된 사절단의 명칭과 역할 등은 韓文鍾, 『朝鮮前期 對日 外交政策 硏究』,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을 참조.

²⁸⁾ 三宅榮利, 손승철 역, 『근세 한일관계사 연구』, 이론과실천, 1991, 63쪽. 일본 사절과는 달리 중국에 파견되는 사절의 경우, 정사, 부사, 종사관이 파견되는 三使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태종실록』태종 17년 5월 戊戌(13)).

^{29) 『}海行錄』 1606년 9월 10일(서울대 규장각 奎貴 9888-00).

제가 정착화 된 것은 회답겸쇄환사였다. 이것은 이후 회답겸쇄환사나 통신사에도 모두 적용되었다.

10년이 가까운 일본의 국교 재개 요청에 대한 사절인 만큼 사절단의 인원 배정에 신경을 쓴 듯하다. 일본측에서 어떠한 요구가 있어도 잘 응변할 수 있는 자, 후환이 없도록 사려가 있는 자를 뽑았다. 이렇게 하여 정사에 呂祐吉, 부사 慶暹, 종사관 丁好寬이 三望을 거친 후 삼사로 정해졌다.30)

종사관의 호칭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였다. 경인년(1590)의 예 때르면 서장관이 되어야 했다. 이에 대해

서장관은 臺諫의 結銜(임시 직함)이므로 사헌부의 書東로 마련하였습니다. 경인년의 예로 하자면 서장관의 호칭으로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종사관으로 하면 원역은 그대로 두거나 줄여야 합니다. (중략) 종사관으로 결정된 것은 당초 대신들의 뜻이므로 東曹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여 종사관으로 정하였다.³¹⁾ 당시 종사관의 호칭은 세종 때 파견된 申叔舟의 예에 따른 것이었다.³²⁾ 그러나 실제로 『세종실록』에 신숙주는 서장관으로 일본에 파견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조선왕조실록』에 일본에 파견된 사절 가운데 종사관이 처음 등장한 것은 1439년(세종 21)이다.

日本 通信使 僉中樞院事 高得宗이 아뢴 事目에

 一行 중의 사람으로서 법을 위반하여 賣買 행위를 하거나, 장소 아닌 곳에 횡행하거나, 사사로이 언어를 통하는 자는

^{30) 『}해행록』 1606년 9월 16일, 『선조실록』 선조 39년 9월 壬午(16).

^{31) 『}선조실록』 선조 39년 12월 壬寅(8), 12월 丙午(12).

^{32) 『}선조실록』 선조 39년 12월 庚戌(16). 三宅榮利, 앞의 책, 121쪽.

考察할 법이 없다. 從事官으로 檢察官을 겸해서 고찰을 전담하게 하여, 만일 범하는 것이 있으면 비밀히 기록하였다가 돌아와서 啓閱하고…33)

위 내용으로 보아 종사관은 사절단을 檢束할 수 없는 권한이 없었 던 것 같다. 그래서 檢察官을 겸직하여 역할을 부여했던 것이다. 회 답겸쇄환사의 종사관도 처음에는 사절단을 檢束할 수 권한이 없었던 것 같다.

종사관은 대체로 臺官을 兼帶하지 못해 일행을 糾檢하는데 위세가 없을 듯다. (중략) 이를 위하여 搜檢御史가 차송되어 赴京使行과 같이 한다면 事體가 아주 무겁습니다. 일본으로 건너갈 때本道(경상도) 都事로 하여금 搜檢을 더하여 啓聞하도록 하고, 종사관에게도 하나의 事目을 만들어 주어 그로 하여금 일행을 搜檢하는 책임을 전담하게 하여 조정에 돌아온 후 일행의 간사스런 페단의 일을 일일이 조사하여 아뢰게 함이 마땅한 일입니다.

라고 하였다.34)

서장관은 종사관과는 달리 사헌부 관리로 임명되어 사절단의 물품 檢束이나 언동을 단속하였다. 당초 종사관에게는 이러한 권한이 없 었으므로 중국에 파견되는 赴京使行(赴燕使行)의 예에 따라 搜檢御 史를 보내거나 경상도 都事에게 이 일을 분담하도록 하는 안이 제시 되었다,35)

결국 종사관이 사절단의 檢束을 모두 담당하고 귀국한 후에 조정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종사관의 역할이 강화되고, 이러한 종사관이

^{33) 『}세종실록』 세종 21년 7월 己酉(3).

^{34) 『}선조실록』 선조 39년 12월 丁巳(23).

³⁵⁾ 사절의 무역을 막기위해 京官을 파견하자는 의견은 제2차 회답겸쇄환사인 오윤 겸도 제의한 바 있다(『광해군일기』 광해군 9년 4월 乙巳(11)).

정사, 부사와 함께 파견되는 삼사체제는 1607년 제1차 회답겸쇄환사 를 시작으로 이후 통신사까지 줄곧 이어진다.

2) 사절의 구성

회답겸쇄환사의 총인원은 각 문헌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 1607년 제1차의 경우 경섬의 『해사록』에는 504명이다. 조선후기 일본 사절가운데 최대의 규모라고 알려져 있다. 1617년 제2차의 경우 이경직의 『부상록』에는 428명이라고 한다. 제3차의 경우는 지금까지 알려진기행문인 『동사록』에 파견된 총인원이 없어 알 수 없다. 이에 대해 300명, 460명 설이 있다. 뒤에 파견되는 사절은 그 앞 사절의 예에 따라 인원을 구성한다. 제2차의 경우 격군만 280명에 이르므로 제3차의인원은 300명 보다는 460명이라는 설이 더 신빙성이 있겠다. 이러한추측을 조선측 사료에 알려져 있지 않아 주로 일본측 사료에 기록된 것을 바탕으로 하였다. 460명 설이 신빙성이 있기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다.36)

사절단은 가장 높은 지위의 三使가 통솔하였다.

| | 1607년 | 1617년 | 1624년 |
|-----|--------------|----------|---------|
| 正使 | 여우길 | 오윤겸 | 정 립 |
| | (첨지, 통정대부) | (첨지중추부사) | (형조참의) |
| 副使 | 경섬 | 박 재 | 강홍중 |
| | (홍문관 교리) | (행호군) | (승문원판교) |
| 從事官 | 정호관 | 이경직 | 신계영 |
| | (전 都事, 공조좌랑) | (행사과) | (예조정랑) |

사절 파견 때 三使의 관직명

^{*} 참조 : 『해사록』, 『부상록』, 『동사록』

³⁶⁾ 三宅英利, 앞의 책, 159~160쪽. 1607년, 1617년의 경우도 문헌에 따라 총 인원수의 차이가 있다.

정사인 여우길, 오윤겸, 정립은 정3품 당상관이며, 부사인 경섬은 정5품, 박재는 정4품, 강홍중은 정3품 당하관이며, 종사관인 정호관은 정6품, 이경직은 정6품, 신계영은 정5품의 반열에 있었다.³⁷⁾ 『通文館志』에 기록된 通信使의 삼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使:1명、文官、堂上官、結衛や 吏曹參議

副使:1명.文官.堂下官 정3품.結銜은 典翰 從事官:文官.5·6품.結銜은 弘文館 校理38)

모두 문관이며 품계가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삼사 아래 員役을 구성하는 데에는 상당한 노력이 있었다. 특히 제 1차 회답겸쇄환사의 경우는 前例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종종 드러났다. 어느 사절이든 員役 구성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국교 재개를 위한 첫 사절인만큼 더욱 신중하 게 員役을 구성하였다. 그래서 제1차 회답겸쇄환사 파견 때에는 몇 가지 기준이 제시되었다.39)

- 1. 경인년(1590년) 예에 따른다.
- 2. 경인년 전례에 대한 관련 문건이 없으니 앞서 다녀온 사신에 게 묻는다.
- 3. 승려는 데려가지 않는다.
- 4. 漢涌事를 줄이고 倭涌事를 늘인다.
- 5. 製述官 및 寫字官을 데려가야 한다.
- 6. 四譯院. 圖畵署. 兩醫司 등에 물어서 전례에 따른다.

^{37) 『}동사일기』에는 오윤겸은 병조참의(정3품 당상관), 박재는 군기시정(정3품 당하 관), 이경직은 예조정랑(정5품)의 假銜을 받았다고 나타나 있다.

^{38) 『}通文館志』 卷6, 交隣 下, 『春官志』 卷2, 通信三使及一行員役.

^{39) 『}선조실록』 선조 39년 6월 甲寅(17), 10월 壬寅(7), 癸卯(8), 10월 乙卯(20), 庚申 (25), 11월 丁丑(12), 12월 丙辰(22), 丁巳(23).

- 7. 軍官은 각별히 가려 뽑는다.
- 8. 樂工은 줄인다.
- 9. 奴子는 잘 참작하여 데려간다.

위 내용은 『선조실록』에 나타난 중요 기사를 정리해 본 것이다. 員役 구성에 가장 기준이 된 것은 1590년 정사 황윤길, 부사 김성일, 서장관 허성이 파견된 사절이었다. 三使 구성도 이 예를 따랐다. 그 런데 임진왜란으로 관련 문건이 모두 불에 타고 남아 있는 것이 없 었다. 그래서 당시 파견되었던 사절에게 묻거나, 員役을 차출한 적이 있는 四譯院, 圖畵署, 兩醫司 등 해당 관청에 일일이 물어서 前例를 수습하여 員役을 구성하였다.

그 과정에서 정사 여우길은 당시 일본 사회의 특성에 맞추어 승려를 사절에 포함시키려고 하였다. 일본은 당시 漢文을 익히고 중요한 政務를 보던 지식인 계층은 승려였다. 1604년 파견된 승려 유정이 이점을 잘 살펴 探賊使로서의 역할을 다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더 이상 승려 파견은 어렵다고 지시가 내렸다.

또한 여우길은 여러 임무를 가지고 파견되는 회답겸쇄환사의 중요성을 말하고 이 일들을 잘 수행하기 위해 일본어 역관의 추가 배정을 요구하였다. 전례와 같이 중국어 역관을 더 테리고 가는 것 보다는 일본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본어 역관을 추가로 배정하자는 의견이었다. 이것은 쉽게 결정되었는데, 역관은 점차 직급에 따라 역할이 세분화되었으며, 증원되었다. 소통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의사소통의 중요한 매개인 역관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일본에서의 교류가 증가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다만 회답겸쇄환사의 역할이 중한 만큼 역관의 통역에만 의지할 수 없으니 문장에 능한 제술관과 글씨에 능한 사자관의 차출을 요구 하였다. 筆談을 통해 정확하게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제1차의 정사인 여우길이 추천한 학관 및 사자관은 모두 해당 관청인 承文院에서 거부하였다. 醫官의 경우에도 해당 관청인 典醫監 등에서 추천자에 대해 차춤을 반대하였다.

해당 관청 뿐 아니라 차출된 이들도 꺼려해 논란이 있었다. 원역을 구성하는데 해당 관청에서 추천하는 규례는 원래 없었다고 한다. 사절단의 정사는 '自辟'이란 형식으로 수행원을 임의로 구성하였다. 해당 부서의 이러한 반대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다. 결국 예조에서 중재에 나선 후 원역을 구성할 수 있었다. 경섬의 『해사록』에는 1607년 學官 1, 書寫員 1, 醫官 2명이 파견되었다고 기록하였다.

앞 시기의 사절 파견에 대한 문헌이 없어졌을 뿐 아니라 원역 구성에 대한 규례 등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빚어졌다. 원역 구성의 어려움은 제2차 사절 파견 때에도 지적되었다. 4월 출발(실제로 7월 출발)을 예정하고 있었지만 2월 말이 되어서도 부사는 물론 역관도 구성하지 못하였다.40)

반면 군관은 사절에 포함되려는 경향이 강하였다. 상인들이 군관의 직함을 가지고 사절에 다수 포함된 듯하다. 중국에 가는 赴京使行과는 달리 무역행위가 엄격히 금지된 일본 파견 사절이었으므로 군관등의 차출을 신중히 하도록 지시가 내려졌다. 무역행위는 '나라를 욕되게 하는 것', '나라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하여 금지되었다. 1617년 제2차의 경우에는 군관을 각별히 차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병조와 사절단의 삼사가 관련 문서없이, 말 한마디로 군관을 차출하는 것을 금하게 하고 또한 죄인의 족속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하였다.41) 이 역시 무역 행위나 나라의 기밀 누출을 우려한 것이었다.

사절단의 하급 수행원 樂工은 사절단의 위용을 드러내는 것과 관계가 있다. 전례에는 樂工이 5명 포함되었는데 소용이 없다고 하여제1차 파견 때에는 파견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후 사절단에는 吹手의

^{40) 『}비변사등록』 광해군 9년 2월 20일.

^{41) 『}광해군일기』 광해군 9년 4월 辛亥(17).

수가 늘어나고 典樂이 배정되었다. 점차 악대를 갖춘 화려한 사절단 으로 꾸려지게 된다.

나라의 체면과 함께 사절 개인의 체면과 관련있는 것은 데려가는 奴子였다. 정·부사, 종사관 외 군관·역관·의원·화원·사자관들이 노자를 데려갈 수 있는가가 논의되었다. 애초에는 이들에게 노자를 배정하였다가 전례가 되는 경인년에는 데리고 가지 않아 제외하였다. 예조에서는 군관 이하가 노자를 데리고 가면 새로운 규례가되므로 신중한 입장을 취하였다. 해외에 가는 사절인 만큼 사절 員役들이 궁색함을 나타내서는 안되므로 行裝을 꾸릴 노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군관 이하 사자관까지는 노자를 대동할 수 있었다.

이 때부터 사절단에서 노자가 배정되고 그 수도 점차 늘어났다. 제1차 회답겸쇄환사인 만큼 전례에 근거하여 사절단의 員役을 배 정하되 실질적으로 역할을 분담할 수 있고, 조선 국왕사로서의 위엄 을 보일 수 있는 방향으로 꾸려졌다. 일본에 파견되는 사절의 新例를 만들어나갔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관련 문헌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회답겸쇄환사의 원역을 선발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논의를 거쳐야했다.42) 이렇게 차출된 원역을 표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43) 통신사 수행원을 보통 上官, 中官, 次官, 下官으로 구분하는데 회답겸쇄환사 기행문에 기록된 원역 기록 순서 등을 보면 큰 구분을 두지 않았다.

⁴²⁾ 격군, 잡물 등을 배정하는데 있어 통제영은 과중한 부담을 호소하여 경상감영에 분담할 것을 요구했지만 감영은 이를 거부한다. 결국 격군은 호남 左右水營에 40명이 배정되었다. 員役 차출에 대한 전례가 없는 사정을 나타낸다(『선조실록』 선조 39년 11월 丁丑(12)).

^{43) 『}해사록』의 내용 가운데에는 使令, 大平嘯 등의 명칭이 보이나 員役 명단에는 합쳐져서 기록되어 있는 듯하여 표에는 기입하지 않았다. 첨부된 回答兼刷還使 同槎員役錄에는 京砲手가 4명으로 實名이 있다. 그런데 7월 17일(丁未) 일기에 推牌官 4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표에서는 경포수로 헤아렸다.

회답겸쇄환사의 員役

| | 1607년 | 1617년 | | 1624년 | 1636 | 『증정교린지』 통신사행 |
|------|-----------|----------|---------------------|-----------------------|---------------------------------|----------------------------------|
| | 해사록 | 부상록 | 동사일기 | 동사록 | 해사록 | |
| 正 使 | 1 | 1 | 1 | 1 | 1 | 1 |
| 副使 | 1 | 1 | 1 | 1 | 1 | 1 |
| 從事官 | 1 | 1 | 1 | 1 | 1 | 1 |
| 譯官 | 6(漢 1) | 7(漢 1) | 6 | 역관 3 상통사 4 한학 2 | 당상통사 2 상통사 2 차통사 2 漢 2 | 당상 3 상통사 3 차상통사 2 압물관 4 |
| 軍官 | 14(6+6+2) | 12(6+6) | 17(7+7+3) (자제포함) | 17(7+7+3) | 12(5+5+2) | 12(5+5+2) |
| 子弟軍官 | 5(2+2+1) | 5(2+2+1) | | | 5(2+2+1) | 5(2+2+1) |
| 製述官 | | | | | | 1 |
| 睯 官 | 2 | 2(醫員) | 2 | 2(醫員) | 2 | 2(醫員) |
| 良 醫 | | | | | | 1 |
| 學官 | 1 | | | | 1(吏文學官) | |
| 寫字官 | | 1 | 1 | 1 | 1 | 2 |
| 畫員 | 1 | 1 | 1 | 1 | 1 | 1 |
| 書寫員 | 1 | 1(書寫) | 1(寫字官) | 1(書寫) | 1(書寫) | |
| 能書官 | | | | | 1 | |
| 書記 | | | | | 1+1 | 3 |
| 典 樂 | | | | | 6 | 2 |
| 別破陣 | | 2 | 2 | 2 | | 2 |
| 馬上才 | | | | | 2 | 2 |
| 理馬 | | | | | | 1 |
| 旗牌官 | | 1 | 1 | | | |
| 京砲手 | 4 | | | | | |
| 砲 手 | | 1 | 1(馬隊로 표기 | 2 | | 6(2+2+2) |
| 小通事 | 4 | 6 | | | | 10(3+3+3+1) |
| 吹 笛 | 1 | 1 | | | | |
| 小 童 | 6(2+2+2) | 6 | | | 12(4+4+4) | 19(陪小童) |
| 伴倘 | | | | | 1+2+3 | 3 |
| 都訓導 | 3(1+1+1) | | | | | 3(1+1+1) |

22 / 港都釜山 第21號

| 禮單直 | | | | | 1 |
|---------------|---------------------|------|---|------------------|------------------|
| 廳 直 | | | | | 3(1+1+1) |
| 盤纏直 | | | | | 3(1+1+1) |
| 使令 | | | | | 18 |
| | 45(0.0.0) | 4.0 | | | (4+4+4+2+2+2) |
| 吹 手 旗纛節鉞 | 15(6+6+3) | 16 | | | 18(6+6+6) |
| 海縣即数 捧 持 人 | | 8 | | | 4(節鉞捧持) (2+2) |
| 形名手 | | | | | 2(1+1) |
| 纛 手 | | | | | 2(1+1) |
| 月刀手 | | | | | 4(2+2) |
| 巡視旗手 | | | | | 6(2+2+2) |
| 令 旗 手 | | | | | 6(2+2+2) |
| 清道旗手 | | | | | 6(2+2+2) |
| 三枝槍手 | | | | | 6(2+2+2) |
| 長槍手 | | | | | 6(2+2+2) |
| 馬上鼓手 | | | | | 6(2+2+2) |
| 銅鼓手 | | | | | 6(2+2+2) |
| 大鼓手 | | | | | 3(1+1+1) |
| 三穴銃手 | | | | | 3(1+1+1) |
| 細樂手 | | | | | 3(1+1+1) |
| 錚手 | | | | | 3(1+1+1) |
| 羅將 | 12(4+4+4) | 14 | | | |
| 刀尺 | | 6 | | | 7(2+2+2+1) |
| 船 將 | | | | 1+1+1 | 3 |
| 卜船將 | | | | | 3 |
| 沙工 | 18 (4+4+3+3+2+2) | | | | 24 |
| 와 <u>上</u> | | 11 | | | |
| 舵 工 | | 11 | | | |
| 風樂手 | | | | | 18(6+6+6) |
| 屠牛匠 | | | | | 1 |
| 格軍 | 380 | 280 | | | 270 |
| 奴 子 | 28 | 36 | | 2+2+2 (나머지불명) | 52 |
| | 계 504명 | 428명 | ? | , | |

^{*}괄호 안은 대체로 정사, 부사, 종사관에게 소속된 인원을 나타낸 것이다.

표를 보면 제2차 사절이 제1차 사절보다 인원은 줄어들었지만 격군을 제외한 인원은 오히려 제2차 사절이 많다. 점차 원역의 역할이 세분화되고 체계를 잡아갔다고 생각된다. 제1차 사절 파견 때 작성한 『丙午謄錄』에 따라 제2차 사절의 준비를 했지만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44)

제3차 사절도 원역의 역할이 세분화되어가고 규모도 커졌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후 통신사 원역을 보면 이러한 경향은 확연히 드러난다.

3) 사절의 물품 준비

제1차 회답겸쇄환사 파견 때 前例에 관한 문헌이 부족하여 앞서다녀온 사절에게 일일이 물어가면서 사절단을 꾸렸던 것처럼 사절이쓸 물자 준비도 역시 그러하였다. 선박, 格軍, 什物, 식량, 하인 등 모두 1590년(庚寅年) 사절의 예를 따랐다. 45) 또한 가져갈 여러 도구는 유정이 탐적사로 갔을 때의 사례도 참조하였다. 46) 이렇듯 남아 있는모든 사례들을 모아 사절 파견을 준비하였다.

① 예물

員役에 관한 문헌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것과는 달리 가져간 예물은 다행히 중국인 史世用이 쓴 『倭情備覽』에 남아있었다. 이 가운데 경인년에는 보냈지만 米, 鞍, 馬, 鷹, 海松子 등 일곱 가지는 제외하였다.47)

^{44) 『}비변사등록』 광해군 9년 4월 5일, 4월 18일. 『증정교린지』에는 1617년, 1624 년 信行節目이 없어 고찰할 수 없다고 한다. 하우봉은 병자호란 때 소실된 것 이라 하였다(『국역 증정교린지』, 229쪽).

^{45) 『}선조실록』 선조 39년 9월 庚辰(14).

^{46) 『}선조실록』 선조 39년 5월 戊子(21).

제2차 사절의 경우에는 1607년 사절 준비를 위해 1606년 작성한 『丙午謄錄』을 전례로 하여 준비한 것 같으나 내용은 알 수 없다. 다만 일본측 자료인 『通航一覽』에 조선에서 보낸 예물이 기록되어 있어 전후시기와 비교해 볼 수 있다. 조선국왕이 막부장군(일본국왕)에게 보낸 것만 보면 아래와 같다.

| 연 대 | 1607년 | 1617년 | 1624년 | 1636년 |
|----------|------------|-----------|---------|----------|
| | 綿紬 50필 | 鷹 50련 | 俊鷹 50런 | 大段子 10필 |
| | 黑麻布 30필 | 豹皮 30장 | 虎皮 20장 | 大繻子 10필 |
| | 白苧布 30필 | 金襴 30필 | 豹皮 20장 | 白苧布 30필 |
| | 虎皮 8장+*2장 | 帽段 100필 | 人蔘 100근 | 黑麻布 30필 |
| | 豹皮 5장 | 白紬 50필 | 白綿紬 50필 | 黄照布 30필 |
| | 人蔘 50근 | 花席 20권 | 黑麻布 30필 | 人蔘 50근 |
| | 彩花席 20장 | 墨 30정 | 白苧布 50필 | 虎皮 15장 |
| | 白紙 30권+20권 | 虎皮 30장 | 靑斜皮 10장 | 豹皮 20장 |
| 物目 | 淸蜜 10말 | 人蔘 20근 | 白紙 50권 | 彩花席 20장 |
| 100 11 | 黃蜜蠟 80근 | 花絲絹 50필 | 彩花席 20장 | 色紙 30권 |
| | *黃蜜 20근 | 白苧布 50필 | 金襴 10필 | 黄毛筆 50자루 |
| | *靑斜皮 10장 | 黑麻布 20필 | 方絲綃 50필 | 油煙墨 50개 |
| | | 靑皮 10㎡ | 花襴綃 10필 | 靑斜皮 30장 |
| | | 黃毛筆200 자루 | | 魚皮 100장 |
| | | 白紙 31권 | | 黃蜜 100근 |
| | | | | 淸蜜 10말 |
| | | | | 鷹子 20련 |
| | | | | 駿馬 2필 |

출전 : 1607년은 『춘관지』권2, 중예단몰목 참조 *은 추가된 물목임 『통항일람』권3, 朝鮮國部 69과 경섬의 『海槎錄』에는 白紙는 厚白紙, 綿維는 白綿維로 표기되어 있 고, 수량은 같다. 1617년, 1624년 모두 『통항일람』권93, 94에 실려 있는 내용이다.

일본측에서 인기가 많았던 매(鷹)의 경우는 1607년 예물에서 제외 되었다가 이후 사절에서는 꼭 가져가는 품목이었다.

^{47) 『}선조실록』 선조 39년 9월 乙未(29), 『춘관지』 권2, 贈禮單物目.

예물은 일본측에서 흔하지 않는 물품으로 보내달라는 요청에도 불 구하고 1607년 예물을 근간으로 하면서 조금씩 추가되고 있었다.

② 盤纏

사절 일행이 행차하는 데에 소요되는 일반경비를 路需나 路資 또는 盤纏이라고 한다. 반전은 본래 제법 여유있게 지급되었던 것 같다.48) 탐적사 이후 노자가 부족하다는 말이 있었다.49) 이에 따라 사신일 행과 員役에게 지급하는 쌀은 赴京使行의 倍로 하고, 三使의 章服은 尚衣院에서, 원역의 의복·신발은 工曹와 濟用監에서 만들어 주도록하였다.50) 왕래하는 도중에 개인적으로 盤纏을 많이 쓸 것이 예상되므로 전례에 따라 반전을 마련할 때 특별히 많은 수를 주도록 하였다.51) 일본에 파견되는 사절에게 반전은 넉넉히 지급되었고 남으면 員役들이 나누어 가졌다.

특히 많은 조선인을 쇄환해야하는 회답겸쇄환사에게는 넉넉한 반전이 준비되어 있어야 했다. 1607년 여우길은 원래 출발했던 선박 외에 8척의 쇄환선과 함께 귀국한다. 경섬의『海槎錄』에는 '쇄환인이탈 배를 購賃하지 못해 출발하지 못한다', '배를 빌려(賃船) 쇄환인을 나누어 실었다'라고 한다.52) 쇄환해야 하는 조선인의 수를 추측할 수없었기 때문에 돌아오는 길에 급히 쇄환인이 탈 선박을 구하였다. 사들이거나 임대하여 선박을 마련하였다. 이때 선박에 대한 일정한 대가가 치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일본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조선인들을 일시에 쇄환하기 위

⁴⁸⁾ 金德珍, 「1811년 通信使의 使行費와 戶曹의 부담」 『역사와경계』 55, 2005, 4쪽.

^{49) 『}선조실록』 선조 39년 5월 戊子(21).

^{50)『}春官志』 권2, 通信使應行節目.

^{51) 『}海行錄』 1606년 10월 초7일.

⁵²⁾ 경섬, 『해사록』 윤6월 9일(庚午), 11일(壬申).

해 대마도측의 노력이 많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 쇄환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필요하였고 이를 사절에게 요구하였다. 1617년 때는 대마도측의 자금 요구에 대해 거절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쇄환에 노력한 영주들에게 致謝하라는 요청 등을 감안하면 조선측에서 지급된 물품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53)

이상과 같이 조선인 쇄환과 관련해 일정한 자금들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이러한 일을 대비해 반전에 대한 지급은 넉넉했을 것이다.

③ 선박

제1차 회답겸쇄환사가 파견될 때에는 騎船 3척, 卜船 1척, 모두 4척(上船 2척, 下船 2척)을 통제영에서 건조하였다. 정사, 부사, 종사관이 각각 승선하고 나머지 한척은 짐을 싣는 선박이었다. 다만 국교 재개를 위해 처음 파견되는 사절인 만큼 4척 외 연락선을 대동하였다. 聞見 사항을 긴밀히 알려야 할 때를 대비하여 연락용 小船 2척에 격군만을 실어서 보냈다.54) 小船은 따로 건조한 것은 아니고 기존의배를 이용하였던 것 같다.

제2차 때에는 사절단의 선박이 6척으로 고정되었다. 이경직의 『扶桑錄』에 따르면 海神祭를 지낼 때 6척의 무사 귀환을 빌었다. 또한 귀국할 때도 일행 선박 6척과 刷還船 3척이 함께 했다고 하였다.55) 제2차 때부터 6척으로 정해진 듯하다. 제1차 사절 파견 때 통제영에서의 부담이 많다는 의견이 종종 제기되었다. 이러한 사정으

⁵³⁾ 이경직, 『扶桑錄』 6월 23일(甲寅), 7월 12일(甲戌).

^{54) 『}선조실록』 선조 39년 11월 丁丑(12), 12월 丙辰(22), 12월 丁巳(23).

⁵⁵⁾ 이경직, 『扶桑錄』 7월 5일(丁巳), 10월 18일(己卯). 강홍중이 쓴 『東槎錄』에는 上船, 副船, 三四船, 五六船이라는 표현이 나온다(1624년 9월28일(己卯)).

로 이후 일본 파견 선박에 대해 통제영에 6척의 건조를 모두 배정하기 어려우므로 4척만 배정하고, 경상좌수영에 2척을 배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1617년, 1624년 사절 때에는 사절이 쓸 물자에 대해 특별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1606년에 작성한 『丙午謄錄』에 따라 물자가 준비된 듯하다. 또한 앞서 기록한 기행문을 보고 그 전례에 따라 큰 착오없이 사전 준비를 해 나갔다56).

Ⅳ. 貿易活動과 의미

1) 무역에 대한 規制

일본에 파견되는 사절은 중국에 파견되는 사절과 달리 무역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다.

倭奴는 원수의 나라이고 더불어 중국은 부모의 나라이니 情義가 같지 않습니다. 중국 가는 員役은 물화를 가지고 가서 힘써 교역하는 것을 함께 해도 진실로 크게 해가되는 바가 없습니다. 신들의 사행에 만약 물화를 싸가지고 가서 장사하는 일이 있으면 다만 사신들이 모욕당하고 국가가 욕을 입을 뿐 아니라 이익을 따지면서 서로 다투게 되면 점점 일이 생길 우려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57)

⁵⁶⁾ 회답겸쇄환사는 선박 외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나갔다. 1617년에는 회답문서 에 쓸 '爲政以德之寶'를 새롭게 만들었다. 이것은 임진왜란 때 없어져 사절 파견을 기회로 만들었다.(『광해군일기』광해군 9년 2월 癸卯(8)).

^{57) 『}광해군일기』 광해군 9년 4월 乙巳(11).

위 사료는 제2차 회답겸쇄환사의 정사인 오윤겸이 국왕에게 한 말이다. 일본에 파견되는 사절의 무역 행위에 대한 비판은 원수의 나라 일본, 부모의 나라 중국이라는 차별적인 국가관에서 비롯하였다. 국교를 재개한 지 겨우 10년이 지난 즈음이며, 일본을 경시하는 지식 인층의 전통적인 인식이었다. 사절의 무역 행위는 사절의 체면과, 국 가의 위용과 관련될 뿐 아니라 매매 과정에서 불미스런 일이 야기될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또한 일본과의 교역은 1609년 己酉約條가 체결된 후 언제든지 왜 관을 통해 가능했기 때문에 사절의 교역이 크게 시급하지 않았다. 기유약조가 체결되기 이전에도 국가 체면 유지를 위해 사절의 무역 행위를 금지시켰다. 제1차 회답겸쇄환사부터 종사관을 두고, 그에게 事目을 내려 檢束할 수 있는 명분을 제시하였다.

종사관 費去事目

일행이 가져가는 물건은 점검하여 駄(바리)로 꾸린다. 매 바리마다 각각 字標(화물에 부호로 붙이는 글자)를 쓰고, 도장을 찍는다. 또 字號로서 서명 날인하고 도장을 찍어서 (짐바리꾸러미에)매달아 두고 노상에서도 불시에 조사한다. 浦所, 대마도, 다른숙박지에 이르러서는 특별히 점검을 더하여 표시가 없는 것은 몰수하고 범인은 법에 따라 다스린다.

大典後續錄 안에 왜인이 있는 곳에서 조선에 나지 않는 물건과 藥材, 紗羅綾段, 黃·白絲을 매매하는 자는 한결같이 寶物을 잠상한 자에 준하여 모두 법에 따라 다스린다.

大典後續錄 안에 倭銀을 무역하는 자, 왜인이 가지고 온 大狼皮와 잡물을 포소에서 潛商 貿易한 자, 그런 정황을 알고 있는 通事는 모두 법에 따라 다스린다.

鄕通事. 商賈人이 왜인과 때를 기다렸다가 밤을 타서 매매하거

나 혹 왜인과 만나는 자는 潛商禁物條에 따라 논한다.

일행의 上下 員役으로서 본국의 금기 사항과 국가의 중대사에 관련된 것을 누설하는 자는 모두 법에 따라 다스린다.

본국의 각종 書冊, 문서 등을 사사로이 통하여 누설한 자, 중국 과 관련된 모든 일을 누설한 자는 모두 법에 따라 다스린다.

일행이 가져간 軍器는 종사관이 도장을 찍어 장부에 적는다. 이 외의 만약 군기로서 몰래 매매하는 자가 있으면 모두 죄를 다스 린다.

上通事 이하 일행의 하인으로서 禁制에 관련된 자는 장 80 이하는 바로 처단하고 나머지 미진한 조건은 일에 따라 헤아려 다스린다.

우리나라 안에서 犯法한 일은 즉시 계문하고 (일본에) 渡海한 후에 犯法한 일은 귀국한 후 하나하나 써서 아뢸 일이다.58)

위 事目은 내용 대부분이 중종 때 편찬된 『大典後續錄』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 그러므로 종사관이 짐바리를 단속하는 방법이 『大典後續錄』에 수록된 赴京使行의 서장관의 그것과 동일하다. 일본에 파견되는 사절의 경우 일본인과 접촉하는 것 자체가 금지사항이었으므로 매매 물품과 관계없이 무역 행위가 금지되었다. 특히 고급 중국산 비단, 일본산 銀, 軍器 등 몇 가지 물품 등에 대해서는 물품명을 명시하여 매매를 철저하게 금지하였다. 무역 행위도 문제이거니와 일본인과 접촉하여 조선과 중국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든지, 중요 문서와 서책을 빼돌리는 것도 문제거리가 되었다. 이는 일본인의 접촉이 많은 왜관에서 자주 일어난 일이기도 하다.

제2차 회답검쇄화사 때에는 이러한 이유로 格軍 선발에 신중을 더

^{58) 『}해행록』1606년 12월 27일, 三宅英利, 앞의 책, 123쪽, 이민호, 1995, 84~85쪽. 『春官志』 권2, 從事官賚去一行禁斷節目의 내용과 같다.

하였다. 연해의 水手(水夫)들 가운데 일본에서 잡혀갔다가 귀환한 자들이 사절의 格軍으로 많이 충원되었다. 이들은 일본어를 할 수 있으므로 기밀 누설과 매매가 쉽다는 이유를 들어 格軍 차출에서 제외되었다.59)

이상과 같이 종사관에게 『大典後續錄』에 의거한 事目을 내려 사절단의 단속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규제들이 있어도 사절의 무역은 계속 되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거래 물품은 무엇인지,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를 살펴보겠다.

2) 무역 물품

사절의 매매 행위는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절의 무역행위에 대해 '痼弊'라고 할 정도로 만연해져 있었다.60) 회답겸쇄환사에 앞서 탐적사로 파견된 孫文彧의 경우 일본인과 거래할 물건을 약속하고 이후 사절이 올 때 함께 오겠다고 약속할 정도였다.61)

회담겸쇄환사 파견 당시 가장 많이 거래하고자 한 것은 武器였다. 임진왜란 이후 병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무기는 필수적으로 갖추어 야 했다. 무기는 다른 물품보다 엄격히 규제하는 대상이었다. 무기 구 입 요구는 3차에 걸친 회답겸쇄환사 파견 때 모두 나타났다. 엄격히 규제함에도 불구하고 硫黃, 조총, 창, 검 등 軍需物品은 이후 일본에 파견되는 사절(문위행, 통신사)을 통해 꾸준히 수입되었다. 사절은 왜 관에서 군수품 거래가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부족한 군수물자를 조달 하는 창구 역할을 하였다. 이런 기회로 사절 員役의 개인적 치부를 위 한 무역도 아울러 성행하였다.

^{59) 『}광해군일기』 광해군 9년 4월 乙巳(11), 『비변사등록』 광해군 9년 4월 11일.

^{60)『}선조실록』 선조 39년 12월 丙辰(22).

⁶¹⁾ 경섬, 『해사록』 5월 10일(壬申).

1607년의 사례

적국의 전쟁 무기를 비록 많이 무역해 오더라도 진실로 해 되는 바가 없다. 다만 일본 조총 가운데 품질이 좋은 것이 있고 또한좋지 않은 것이 있으니 通事輩들이 충분히 살펴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을 사가지고 오도록 하고, 이에 준해 써야 할 물건값을該曹(호조)에서 수를 헤아려 주어 보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62)

1617년의 사례

이번 회답사 사행은 국가에서 불시에 사용하는 倭朱紅과 上品의 총·검을 많이 무역해 오는 것이며, 이 외에 군기와 관련된 물품으로 무역해 올 수 있는 것은 비변사로 하여금 호조와 협의하고 啓下한 후 값을 주어 보내도록 한다. 만약 우리나라 長技의 弓箭 등 물건을 가지고 가는 자가 있으면 사신 이하는 마땅히 무겁게 다스릴 것을 비변사에 말하고 (중략) 주황과 총·검은 부산개시하는 곳에서 계속 나오고 있으니 값을 주면 上品의 총과 검이 또한 많이 있으니 거래하지 못할까를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63)

1624년의 사례

앞으로 갈 회답사 사절은 만약 花絲紬 수 천필을 준비하여 보낸다면 수천 자루의 조총을 사 올 수 있다. 이것은 전부 경기 지역의 군인(畿兵)에게 주고 교련이 이루어지면 매우 편리하고 이익이 될 것입니다. 戶曹로 하여금 미리 4,000~5,000필을 마련해 두게 하고 期日에 맞게 보내는 터전으로 삼는 것이 마땅할것입니다. (중략, 임금께서 말하기를) 環기도 많이 사가지고 오는 것이 좋겠다.64)

^{62) 『}선조실록』 선조 40년 1월 己巳(5).

^{63) 『}비변사등록』 광해군 9년 5월 22일.

^{64) 『}비변사등록』 인조 2년 4월 24일.

위 사료의 내용은 모두 비변사에서 제의하였다. 무기 가운데 조선에서 가장 선호하는 것은 총(조총)이었다. 특히 임진왜란 때 본 조총은 가장 좋은 전쟁 무기로 생각되고 있었다. 특히 제1차 회답겸쇄환사 직전인 1607년 1월 1일⁶⁵⁾, 1월 4일, 1월 5일에 걸쳐 계속 조총 수입에 대한 긍정적인 논의가 계속되었다.

1607년 1월 사행 무역에 대한 禁制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비변사가 나서서 요구한 것은 아직 왜관에서의 무역이 활성화되지 못한터였다. 또한 북쪽 변방 지역이 평안하지 못하였다. 1605년 件加退에주둔하는 忽恆(忽族)가 3월 童關 지역을 침입하여 첨사 全伯玉이 戰死하는 변란이 생겼다.66) 북방의 위급한 상황은 1607년까지도 계속이어지고 있었다.67)

홀족의 침입으로 훈련도감과 軍器寺에서는 총통, 화약, 분화통, 화약 등 많은 화기들을 북방으로 보냈다. 군기시의 군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파손된 종으로 화기를 만들 정도로 북방의 정세가 위급하였다. 또한 8월 온성부사 鄭沆는 조총 및 화기를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화기에 대한 절대 부족이 문제시 되었고 비축 마련에 고심하였다.68)

이러한 무기 부족과 화기에 대한 필요성 등으로 제1차 회답겸쇄환 사에게 무기 수입을 지시하였다. 밖으로는 무기 거래를 금지시키고 안으로는 국왕은 비망기를 내려 비밀리에 무기 수입을 추진하였다.69 제1차 회답겸쇄환사가 파견되어 구입해온 무기는 長槍 100자루, 조총 500자루였다.70) 당초 호조에서 지급할 수 있는 무기 값은 조총

^{65) 『}선조수정실록』 선조 40년 1월 乙丑(1).

^{66) 『}선조실록』 선조 38년 4월 癸酉(29).

^{67) 『}선조실록』 선조 40년 4월 丙申(4).

^{68) 『}선조실록』 선조 38년 5월 乙未(22), 己亥(26), 6월 庚戌(7), 乙卯(12), 8월 丙午(4).

^{69) 『}선조실록』 선조 40년 1월 戊辰(4).

40자루 값이었다. 그래서 차라리 무역을 하지말고 조선인 쇄환에만 주력하도록 하였다. 무기 수입을 빌미로 역관들이 사적인 무역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었다.⁷¹⁾ 이러한 건의에도 불구하고 역관 崔義吉의 주도 아래 조총 구입은 이루어졌다. 무기 수입에 일본측의 적극적인 도움도 있었다. 제1차 사절의 파견 이전에 이미 德川家康이 조선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허락한 후였으므로 일본에서 무기 판매를 금 지하지 않았다.⁷²⁾

무기도입 뿐만 아니라 조총을 다룰 수 군인의 확보도 중요하였다. 일본에 오랫동안 체류하면서 조총을 다룰 수 있는 조선인에 대해서 는 기행문에 특별히 기록하고 또한 쇄환도 염두에 두었다.

두사람이 왔는데 한 사람은 울산인이고, 한사람은 진해인이다. 임진왜란 때 잡혀와서 또한 義眞의 奴가 되었다. 지금 敎師로서 鳥銃을 가르친다고 한다.73)

곤양인이 와서 스스로 일컫기를 김첨사의 아들이며 임진년에 잡혀와서 이곳에 거주한다. 放砲를 잘해서 수십여명을 거느리고항상 敎習한다.⁷⁴⁾

1607년, 1624년에는 무기 수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었지만 반면 1617년에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였다. 이러한 비변사의 태

⁷⁰⁾ 경섬, 『해사록』 윤 6월 6일(丁卯), 7일(戊辰), 8일(己巳)

^{71)『}해행록』 1607년 1월 11일.

⁷²⁾ 이보다 앞서 북쪽 변방으로 가는 사람이 왜관에서 일본 環刀를 구입하려 하자일본인이 금지시켰다. 당시 대마도주의 사절로 왜관에 있던 橘智正은 오랑캐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환도 구입을 금하지 말도록 하였다(『선조실록』 선조 39년 2월 辛亥(12)), 당초 조총 40자루 구입 밖에 안되는 자금 상태에서 조총과 창을 구입한 것에 대해 일본에서 받은 贈給物로 구입했다고 하는 의견(三宅英利, 124쪽), 조선의 별도 지시에 따랐다는 의견(홍성덕, 105쪽)이 있다).

⁷³⁾ 강홍중, 『동사록』 1624년 11월 30일(庚辰).

⁷⁴⁾ 강홍중, 『동사록』 1624년 12월 14일(甲午).

도는 1607년 사절이 돌아온 후 무기 수입과 관련하여 정·부사, 종 사관이 조정의 탄핵을 받은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었다.75) 1621년 일본에서 武器輸出禁止令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왜관 개시 무역을 통해 자유롭게 무기 거래가 가능했기 때문이다.76) 公貿를 허락하면 일행의 私貿가 많아져 금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오히려 국왕이 1607년의 사례를 조사하라고 하여 무기 수입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軍務를 담당하는 비변사의 이러한 태도 때문인지 제2차 사절의 기행문인 오윤겸의『東槎上日錄』, 박재의『東槎日記』, 이경직의 『扶桑錄』에는 무기 구입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주목되는 것은 이번 사행을 기회로 조총이 대량 수입된 사실이다. 제2차 회답겸쇄환사에게 막부장군이 은 6,000 여냥을 답례로주었는데, 오윤겸을 비롯한 사절은 이를 받지 않고 귀국하였다. 일본에서는 이 은을 대마도주를 통해 부산왜관으로 보내고 조선에서 사용할 것을 알렸다. 이에 대해 조정에서는 많은 량의 은을 받지 않고돌아온 사절에게 賞典을 내려한 한다고 의논하면서 이 은을 어떻게쓸 것인가를 논의하였다. 당시 각종 궁궐 재건 공사를 담당하고 있던 營建都監에서 사용하도록 하였다.77) 그런데 이 중의 일부를 내어 부산왜관을 통해 조총을 구입하였다. 동래부사가 올린 牒목에

兵器都監에서 倭鳥銃 300자루, 環刀 100자루를 회답사의 禮單銀子로 구입하여 올려보내라고 한 것은 이미 지시를 받았습니다. 앞서 정한 조총 200자루 외 100자루를 더 구입하여 올려보내라고 하였기에 (중략) 앞서 정한 조총 200자루 내에 40자루

^{75)『}선조수정실록』 선조 40년 8월 辛酉(1).

⁷⁶⁾ 米谷均,「十七世紀前期日朝關係における武器輸出」『十七世紀の日本と東アジア』,山 川出版社,2000,41쪽.

^{77) 『}광해군일기』 광해군 10년 6월 壬午(25).

와 환도 100자루는 이미 구입하여 올려보냈는데 왜관에 조총이 거의 없어 구입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였다.⁷⁸⁾ 영건도감으로 보내진 은의 일부가 병기도감에 지급되었고, 이 은은 동래부에 내려져 조총과 무기를 구입하는 자금으로 쓰였다. 왜관에서도 조총을 구하기가 어려워 당시 상품이 목면 24~5필, 次品(중품)이 목면 20 여필, 하품이 15필에 달해서 병기도감에서 정한 조총 1자루당 2냥 4전의 은으로는 절대로 구입 못한다고하였다.⁷⁹⁾

제2차 파견 때 비변사가 무기 구입에 적극적이지 못한 반면 병기 도감에서는 자금을 확보하여 무기 구입에 나섰다.

1613년 함경북도 兵使 李時言은 누루하치(奴酋)가 홀족을 물리치고 세력을 확대하는 것을 조정에 보고하였다. 이에 앞서 1611년 누루하치는 八旗兵制를 확립하고 명을 위협하고 있었다.80) 무기 확보 노력은 임진왜란 이후 계속되는 북방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624년 제3차 사절 파견 때에는 비변사의 적극적인 무기 구입의 요청이 있었다. 1621년 후금 세력의 요동 장악을 견제하기 위해 明軍이 평안도에 주둔한 후 조선은 軍糧, 軍船, 銃手를 막대하게 원조하였다. 1624년(인조 2) 3월에는 북방에 변란을 겪고 있는데도 무기가 없다는 보고와 지난 1월 이괄의 난으로 무기를 모두 쓰고 화약은 장만하기도 어렵다는 보고가 연이었다.81)

^{78) 『}啓本謄錄』第二, 萬曆 己未(1619), 4월 28일(규장각-古 4255-17-2).

⁷⁹⁾ 위의 사료와 같음. 당시 조총 1자루의 값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사료이다. 米谷 均은 앞의 글에서 1623년 조총 1자루의 값이 15필이라는 『승정원일기』의 기록을 인용하였다(米谷均, 앞의 글, 47쪽).

^{80) 『}광해군일기』 광해군 5년 2월 戊午(30), 三宅英利, 앞의 책, 134쪽.

^{81) 『}인조실록』 인조 2년 3월 甲子(10), 3월 戊辰(14).

이를 반영하듯 1623년, 1624년 대마도에서 예물로 보내는 무기의 종류가 조총, 염초, 유황, 鉛鐵, 金遣子 등으로 다양해지고 양도 증가 한다.⁸²⁾ 하지만 비변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답겸쇄환사의 반대로 무기구입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왜관을 통해 반입되고 있었다.

무기 구입에 대한 요구는 이후 사절에게 꾸준히 나타나고, 무기 매매 행위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였다. 1655년 통신사 역관인 홍희남의 경우는 장검과 유황을 구입해 왔다. 이미 조정의 분부를 받은 후 이루어졌으며 무기를 구입한 공에 대해 상이 내려질 정도였다.

무기 외 倭朱紅의 구입 요청도 있었다. 주홍은 궁궐의 단청, 국왕의 가마 등의 염료에 사용되므로 궁궐의 공사가 진행 중이던 광해군대에 많이 사용하였다. 왜관으로 들어오는 양이 적어 사절이 파견되었을 때 직접 조달하게 하였다. 주홍 부족으로 중국에서도 주홍을 수입해 오도록 하였다.83)

회답겸쇄환사의 무역 활동은 파견 당시의 국내외 정세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 비록 많은 양의 무역은 하지 않았지만 그때그때 국내의 긴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창구가 되었다.

3) 무역 상인

회답겸쇄환사 가운데 무역을 적극적으로 해 나갔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大典後續錄』에는 上通事 이하의 하급 員役의 무역에 대해 검속할 것을 적고 있다. 이는 정·부사, 종사관을 제외한 거의 모든 員役들의 무역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사절단 가운데 무역상인으로 가장 많이 지목되는 것은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역관들이다. 1607년 일본의 堺에서 조총을 구입한 최의길

⁸²⁾ 米谷均, 앞의 글, 51쪽 표 참조.

^{83) 『}광해군일기』 광해 8년 8월 癸卯(5), 광해 9년 6월 戊午(25).

이 대표적이다.

사신 일행 通事 이하가 만약 물건을 많이 가져가서 賊에게 通貨의 길을 보인다면 후일의 걱정이 됩니다. 사신에게 알려 일체 엄히 금하도록 해야합니다 84)

전쟁에 사용하는 무기로는 왜인의 조총이 가장 절묘하다. 白金을 넉넉히 보내 譯官들로 하여금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을 사서 가져오게 하라. (중략) 이로 인하여 물건을 많이 가져가고, 모두 興利의 계책이 있었다.85)

1607년 내려진 종사관의 事目이나 『大典後續錄』에도 부산지역에서 차출되는 하급역관인 鄉通事(小通事)가 일본인과 접촉하기 좋은 것으로 기록하였다. 역관은 일본어를 할 수 있었으므로 다른 員役과 같이 역관 등을 매개하지 않고도 쉽게 일본인을 접하고, 거래도가능하였다. 또한 1609년 기유약조 이후에는 왜관에서의 무역이 증대되면서 역관은 朝日貿易의 교섭자, 監察者로 활동하면서 직접 무역상인으로 활동하다.86)

역관은 사절 파견 때도 마찬가지였다. 1624년 사절 때 역관과 小通事, 砲手가 결탁하여 매매가 금지된 禁物을 가졌다가 종사관에게 발 각된 일이 있었다. 또한 출발이 늦어지면 조선인과 일본인의 매매가 끝나지 못해 지체되는 것이라고 의심을 살 정도로 무역이 빈번하였던 것 같다.87)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도 있었다. 1643년 통신사 때 역관 尹悌顯은

^{84) 『}선조실록』 선조 39년 11월 庚午(5).

^{85) 『}선조실록』 선조 40년 1월 乙丑(1).

⁸⁶⁾ 양홍숙,「17~18세기 譯官의 對日貿易」『지역과 역사』5, 1999.

⁸⁷⁾ 강홍중, 『東槎錄』 10월 13일(甲午), 18일(己亥).

사대부가의 재물을 받아 일본 물품을 무역해 준 것이 드러났다.88) 이러한 무역 고리는 1643년 뿐 아니라 이전부터 있었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조선에서 부산왜관을 통하지 않고는 일본 물품을접하기가 쉽지 않았다. 서울 사대부가에서는 일본에 파견되는 員役에게 부탁하여 사치품이나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였을 것이다.

역관 다음으로 무역상인으로 주목받은 것은 군관이었다.

일본 差官의 軍官으로 自望한 숫자가 15명이 이른다. 이 무리들은 서울에 거주하는 市井牟利輩들로 진실로 데리고 가는데 합당하지 못하다.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리배는 데려가지 마라. 일이 생길까 걱정된다 (중략) 史臣이 말하기를, 원수의 땅에 사람을 보내는 것은 이미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데 하물며 前日의행차에 모리배들이 재화를 지니고 왕래하여 賊人에게 경시되는 바에는 ..89)

일본에 파견되는 사절이 장시간의 여정이며, 또한 바다를 지나는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수행원(군관)을 스스로 천거할 수 있었다. 이 렇게 천거된 사람들이 서울에서 상업을 주로 하던 상인이었던 탓에 부적합하다는 말이 나왔다. 사절의 수행원이 전부터 교역에 주력했 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왜관의 동래상인을 거치지 않고 일본 물 품을 수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서울 상인에게 사절의 군관 자리가 인기가 많았던 것 같다.

군관 이하가 노자를 데려가는 것을 간여하지 않겠다. 범람하고 간사한 모리배와 종적이 명확하지 않는 자는 일체 데리고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90)

^{88) 『}인조실록』 인조 21년 12월 丁亥(27).

^{89) 『}선조실록』 선조 39년 6월 甲寅(17).

위 사료 또한 군관·의원·화원 등의 노자로 가는 사람 가운데 상인이 포함되어 밀무역을 전개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상인이 군관의 직함을 받고 사절단에 포함되거나, 員役의 하인이 되어 사절에 포함되는 것은 부경사행의 하인이나 군관으로 상인들이 다수 포함되었던 것과 같다.

하급 원역들의 교역 행위가 줄어들지 않자 제3차 사절의 정사인 鄭岦은 다시 부경사행의 예처럼 京官인 搜銀御史가 파견되어 사절을 단속하자고 하였다.⁹¹⁾ 엄격하게 내려진 무역 禁制에도 무역이 가능 했던 것은 사절 파견 때마다 국왕이나 비변사 등이 나서서 무기 구 입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무역상인들은 무기 구입을 명목삼아 일본상인과 거래를 하였다.92) 특히 제1차 사절 때에는 조정의 탄핵에도 불구하고 국왕이 나서서 무기 수입을 옹호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무역해 온 일본산 물품들은 '우리나라 시장에 낭자하다'할 정도로 조선의 시장에서 유통되었다.93) 사절의 무역상인은 주로 군관, 군관의 노자, 상하급 역관이었다. 국가 수요품을 무역하는 기회로 개인 치부를 위한 무역을 도모하였다. 또한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부경사행에 비해 많은 여비와 예물이지원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역자금이 여유로웠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무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경사행의 예처럼 각 軍門에서 무역자금을 대여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국내외 정세, 왜관의 무역 동향 등에 따라서 긴급히 수입해야하는 물품인 경우는 사절을 통해 수입해 오고 있다. 또한 사절이 파견되어 직접 무역을

^{90) 『}선조실록』 선조 39년 10월 乙卯(20).

^{91) 『}인조실록』 인조 2년 8월 壬寅(20).

^{92) 『}선조실록』 선조 40년 9월 甲午(4).

^{93) 『}선조실록』 선조 40년 9월 乙未(5).

해오지 못하더라도 사절의 귀국과 함께 일본에서 들여온 禮物銀이 무역자금이 되기도 하였다. 예물은으로 왜관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 입하기도 하고, 공무역으로 수입된 일본 물품을 결제하는 수단이 되 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이 회답겸쇄환사의 무역은 朝日貿易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고 해도 17세기 전반기 국내외 정세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다. 조선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었고, 이를 기회로 일본 물품이 수입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창구였던 것이다.

V. 맺음말

임진왜란 후 10 여년에 걸친 일본측의 국교 재개 요청으로 제1차 회답겸쇄환사가 파견되었다. 일본 막부 장군의 요청에 대한 回答과 무고하게 일본에 끌려간 자국민을 쇄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었다. 제2차, 제3차 파견 때에도 일본측의 사절 요청에 대한 회답이 었고 조선인 쇄환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일본으로의 사절 파견은 조선측에서도 필요했던 일이었다. 국서 위조 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힘들 어지는 쇄환, 북쪽 변방의 불안, 남쪽 변경의 안정이라는 국내외 문 제들로 사절은 파견되었다.

제3차 사절이 막부장군의 襲職을 축하하기 위한 사절로 파견되고, 쇄환인의 수가 크게 격감한다. 또한 이미 국교가 재개된 이후이므로 대등한 국가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의미했다.

회답겸쇄환사의 파견과 아울러 전란의 상흔을 극복해 나가면서 이

후에 파견된 사절은 通信使라 불리었다.

회답겸쇄환사가 조선인을 쇄환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미 선학들의 연구가 많으므로 쇄환에 대한 것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회답겸쇄환사가 통신사와는 다른 시대적 배경에서 나온 사절임을 강조하였다. 외국에 파견되는 사절이므로 국가의 체면을 강하게의식하였으며, 再侵의 우려 등으로 일본 정세 파악도 회답겸쇄환사가 반드시 해야하는 일이었다. 朝日 국교 재개에 대한 明의 태도도들 주목해야했다. 明・淸 교체기에 국제적으로 고립이 되지 않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는 회답겸쇄환사의 처세, 활동에 영향을 주었다. 통신사 파견 때는 큰 문제가 안 되는 回禮銀, 軍需物品 구입 등의 일은 회답겸쇄환사 파견 때는 큰 문제가 되는 등, 각기 다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회답겸쇄환사의 사절 규모, 구성, 물품 준비 등은 통신사 파견의 前例가 되어갔다. 회답겸쇄환사의 파견으로 국교 재개, 己酉 約條 체결이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세차례에 걸친 일본 파견은 일본 에 대한 정보를 다양하게 수집하면서 再侵의 우려를 극복하게 하였 다. 일본 사회를 점차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信義를 통하는 通信使 가 파견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